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 ▶ : 2019년 8월 23일(금) 오후 3시
- ▶ 장소: 서울역 KTX 1 회의실
- ▶ 주관: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회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 개요

- (일시·장소) 2019. 8. 23(금) 3:00 ~ 5:00 / 서울역 KTX 제1회의실
- (주관)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회

□ 세부 계획

좌장 : 박창신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		
시간	프로그램	발표
3:00~3:20	- 인사말 및 행사 취지 안내 - 환경단체소송제도 제안 배경과 필요성	박창신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
3:20~3:40	- 환경단체소송 도입시 원고 요건의 쟁점	김연화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
3:40~4:40	- 참여 단체 전체 토론 · 김금호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사무국장 · 민성환 생태보전시민모임 공동대표(미정) ·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부소장, 변호사 · 윤도현 강릉 생명의숲 사무국장 · 이오이 환경정의 사무처장 · 이정현 용인 환경정의 사무국장 · 정규석 녹색연합 협동처장 · 정연주 안동 환경운동연합 사무간사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홍은화 수원 환경운동센터 국장	참석자 전체
4:40~5:00	- 토론 내용 정리 및 이후 계획	좌장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발표1

환경단체소송제도 제안 배경과 필요성

박 창 신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 변호사

환경단체소송제도 제안 배경과 필요성

환경정의 집행위원, 법무법인(유한)강남¹⁾ 변호사 박 창 신

먼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환경단체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나누고자 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환경정의에서 추진중인 환경단체소송제도 입법에 관하여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입니다. 우선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에 앞서서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환경정의가 검토하여 온 입법내용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는 김연화 변호사님께서 우리의 단체소송 관련 입법현황 및 해외 입법현황에 관하여 말씀드림으로써 환경단체소송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전제할 경우 원고적격을 가지게 되는 환경단체의 요건을 어떻게 규정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많은 말씀을 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이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

지금껏 많은 환경소송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환경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주의를 환기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의미를 넘어선 실효성이 확보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환경정의는 지난 2018. 11. 27.에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1) 본 검토의견은 사단법인 환경정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여 포럼을 개최한 바 있고, 포럼에서 정남순 변호사님께서는 (1) 기존 환경소송에서 원고적격을 인정받기 어렵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인근 주민들이 거주지 변동·갈등 회유 등의 이유로 사실상 변론종결시까지 소송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2)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더라도 이를 사법상 쟁송 단계에서 다투기 어렵고, 현재 쟁송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과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상 한계가 있는 과학적·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며, (3) 행정청이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을 제외하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다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환경소송의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정남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환경소송의 어려움은 기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의 적격을 좁게 규정한 행정소송법, 민법상의 물권(특히 소유권)에 기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법상의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사법(私法)상의 제한으로 인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서 위 어려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잘 아시는 ‘가리왕산’ 스키장 복구 사안에 사법접근권을 적용하는 부분을 가정해 보셨으면 합니다. 가리왕산은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닌 국유재산입니다. 사법(私法)상의 논리에 따른다면 저를 포함하여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누구도 우리의 것이 아닌 가리왕산이 복구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공법(公法)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가장 큰 걸림돌이 복구에 관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법률상 보호받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법률상 보호받는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가리왕산 인근 주민들이 될 수 있을 것이나, 경제적 이익 등을 이유로 가리왕산 인근 주민 및 지자체는 스키장 존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리왕산 인근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가리왕산 인근 주민들이 원고가 되어 복구를 하지 않고 있는 강원도를 상대로 하거나 혹은 복구명령에 따른 대집행 등 절차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환경부(대한민국)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행정소송법 체계 내에서는 승소가 실질적인 의무이행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리왕산 복구에 관하여 복구하라는 시민의 의사 표시를 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이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사례는 분명하게 환경단체가 공공의 자산인 환경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적격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공익을 대변하여야 할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공익에 반하는 개발을 진행할 때, 이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소극적인 해석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함으로써 제도를 구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와 같은 대륙법 체계인 독일을 포함하여 많은 국가들이 환경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바, 생소한 개념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에 관하여는 김연화 변호사님께서 말씀드

리도록 하겠으며, 다음으로는 환경정의가 그 동안 고민하여 왔던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에 관한 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 국내의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에 관한 방안

중국의 경우에는 환경단체의 민사공익소송만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독일의 경우에는 환경단체의 행정공익소송만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통하여 보호하여야 할 이익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행 행정소송상의 객관적 소송 형태에서 환경단체소송을 인정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행정청이 됩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을 매개로 하지 않는 사인 간에 발생한 환경오염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민사소송에서 환경단체소송을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은 행정소송에서 해결할 수 없는 별도의 영역에서 비롯됩니다.

(1) 제1안 : 별도의 환경소송법 제정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의 특칙으로서 별도의 환경소송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환경소송법을 만드는 경우,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1항은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 먼저 ‘순수환경손해’의 개념을 규정함으로써 소송대상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고, ② ‘순수환경

손해'에 관한 처분 및 부작위에 관한 쟁송에 있어서 환경시민단체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것을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③ 또한 무분별한 환경시민단체의 남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체소송 제기가 가능한 환경시민단체의 요건을 정하여야 하고, ④ 환경시민단체의 소송 제기시 법원의 허가를 득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경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의 경우 원고적격 유무에서 판단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인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경시민단체가 제기하였음이 소명된다면 원고적격 유무에서 법원이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간명할 것입니다. ⑤ 현행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순수환경손해 회복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⑥ 여러 단체들이 중복하여 동일한 소를 제기할 경우의 각각의 소의 관계를 규정함으로써 모순된 결과를 방지하고 소송경제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민사소송법의 경우 ①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하는 경우 판결에 따른 금원의 귀속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바, '순수환경손해'에 관한 유지청구로 제한하는 것이 공익성에 부합할 것이므로 소송범위를 '순수환경손해'의 유지청구로 정할 필요가 있고, ② 소제기가 가능한 단체의 요건의 경우 위 행정소송에서의 단체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③ 나아가 민사집행 판결의 효력 범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인데, 단체가 제기하여 판결을 득한 경우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재산권 등이 침해된 사인이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이미 득한 판결의 효력이 미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④ 여러 단체들이 중복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의 행정소송 부분에서 규정한 단체들이 제기한 각각의 소의

관계에 관한 규정이 마찬가지로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⑤ 입증책임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거나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적어도 ‘순수환경손해’에 관하여는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제2안 : 행정소송법의 원고적격 부분 개정

기존 판결례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주로 행정소송에서 환경시민단체의 원고적격 유무이었던바,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별도의 항을 만들어 ‘순수환경손해’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환경시민단체에 대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시민단체의 요건을 어디에 규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기존 환경분쟁조정법 제26조의 요건에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위 환경분쟁조정법 제26조의 요건을 그대로 차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실질적인 면에서 그대로 차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3) 제3안 : 환경영향평가법 등 개별 법률에서 환경시민단체의 의견제시에 관한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위 권리가 침해될 경우 절차적 권리 침해를 이유로 기존 행정소송법 상의 원고적격을 인정받는 방안

환경영향평가법 등 개별 법률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경시민단체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권리가 침해될 경우 기존 행정소송법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원고적격을 인정받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 결론

환경단체소송제도의 도입은 순수환경손해에 관한 침해방지, 원상회복 등 달성가능한 공익의 범위, 실제 입법가능성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중국·독일 사례를 보더라도 환경시민단체소송제도의 도입이 전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금전적으로 환산되기 어려운 ‘순수환경’에 관한 유지·보전을 위하여 우리의 토대인 ‘순수환경’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 제시 절차의 보장 및 사법액세스권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세 가지 안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① 행정절차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전문성이 있는 환경단체의 의견제시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② 환경단체의 의견제시에 관한 입법상의 공백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환경단체의 의견제시권과는 별도로 ‘순수환경손해’에 관한 행정소송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경단체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고, ③ 민사소송에서도 ‘순수환경손해’를 방지하고 더 이상의 침해를 금지하는 유지청구에 관하여 환경단체가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등하지 않은 사인들 간의 분쟁을 균형감 있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위 세가지 안은 각각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고려되어

야 합니다.

지난 2018. 12 환경정의는 별도의 환경소송법을 제정하는 안에 관하여 입법안을 만든 바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후첨하였습디다만, 현재 국내에서 「환경손해법」 제정, 「환경분쟁조정법」 개정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환경단체소송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바, 다른 연구들에서 제시하는 방안에 관한 검토를 통하여 보완되어야 합니다.

향후 검토 및 보완이 이루어지겠지만, 오늘은 말씀드린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방안 중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 환경단체의 요건(범위)을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에 관하여 고민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하여 참석하신 분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리고,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에 관하여도 의견이 있으시면 많은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소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시민단체가 행정소송절차 및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자연환경 및 자연경관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침해를 제거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시민단체소송의 대상)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연환경이나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의 침해를 발생시킨 경우 침해와 관련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오염행위의 금지·중지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 및 보전처분(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당사자로서 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정관에 따라 환경보호 등 공익의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3. 구성원이 100명 이상일 것
4. 신청일 현재 법인으로서의 자연환경 분야 활동 실적이 2년 이상일 것

제3조(법적용예) ① 단체소송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전속관할) ① 단체소송 중 민사소송에 속하는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5조(소송대리인의 선임)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6조(입증책임의 전환) 오염원인자로부터 비롯된 오염물질로 인하여 자연환경 및 자연경관에 대한 현상이 악화된 경우 오염원인자는 자연환경 및 자연경관에 대한 침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 책임을 면한다.

제7조(정보청구권) 환경시민단체의 피고에 대한 정보청구권에 관하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준용한다.

제8조(확정판결의 효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제2조에 따른 다른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연구결과나 증거가 나타난 경우
2.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제9조(소송비용의 부담) 민사소송법 제98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환경 시민단체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소와의 관계) 단체소송은 자연환경 및 자연경관에 대한 침해와 관련한 피해자가 자신의 사적이익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제기하는 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자연환경 및 자연경관에 대한 침해와 관련하여 자신의 사적이익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제기한 소도 단체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자연환경 및 자연경관에 대한 침해부터 적용한다.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발표2

환경단체소송 도입시 원고 요건의 쟁점

김 연 화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 변호사

1. 서론

환경단체소송을 도입하여 “환경단체”에게 원고적격을 부여할 시, 단체의 요건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각 요건에 따른 장단점 및 해외 도입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구체적인 단체의 요건을 정하기 위함. 단체의 요건 문제는 사법 액세스권 보장 및 제도의 실효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환경단체별로 처한 상황이 상이하므로 제일 민감한 부분이라 생각되는데 실제 단체들이 모여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이번 간담회 자리가 마련됨.

2. 단체요건의 주요 쟁점

(1) 환경부의 사전 승인 VS 법원의 허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경단체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환경부)의 승인을 받게 하고, 승인받은 단체라면 누구라도 단체소송 제기 가능하게 하는 방법과, 소제기시마다 법원의 담당판사가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단체소송을 허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요건은 동일하다고 할 경우 각각의 장단점을 아래 표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음.

	환경부 승인	법원의 허가	해외 사례
장점	환경부 승인을 득한 단체라면, 법원 단계에서 요건을 별도로 심사할 것 없이 원고적격 인정되어 소의 빠른 진행 가능. 불승인시 제3의 기관인 법원을 통해 승인거부처분취	사전 승인 필요 없이, 사안 발생시마다 원하는 단체들 소 제기 가능.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의 기관으로 하여금 객관적인 요건 판단 기대	독일: 행정소송만 가능하고 환경부가 승인 미국: ‘시민소송’ 제도하에 단체도 일정한 이익 입증 시 가능하고 법원

	소소송으로 구제 가능		
단점	<p>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대방이 될 수 있는 행정청이 요건을 심사하게 한다면, 엄격하게 적용할 위험 존재.</p> <p>법률해석의 비전문가인 공무원의 능력 문제</p>	<p>단체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소의 장기화, 시급함이 요구되는 가처분 청구의 경우, 시의적절한 결정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p> <p>판사 개인의 성향, 성격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음.</p> <p>법원의 불허가결정시 항고 등을 통해 구제될 가능성 현실적으로 높지 않을듯</p>	<p>이 판단</p> <p>중국: 민사소송만 가능하고 법원이 판단</p> <p>일본(안): 정부승인</p>

(2) 비영리법인 VS 비영리민간단체

단체의 요건 중 “비영리성”을 요구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법인격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할지는 단체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결정 어려움.

2019.1. 기준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은 430개, 비영리민간단체는 230개(일부 법인포함)로 파악되고 지자체에 등록된 환경관련 비영리민간단체는 2,468개로 파악됨. 소비자단체소송을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기본법의 경우 법인격은 요구하지 않고(일본은 요구함), 3년 이상 등록한 1천명 또는 5천명 이상 회원을 가진 단체를 요건으로 하고 있음.

반면, 현행 환경분쟁조정법에서는 환경부에 등록한 2년 이상 활동한 100명 이상의 회원을 갖춘 비영리법인에게 피해자를 대리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부여.

	법인격 요구	일정한 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구성원수 100인이상)	해외 사례
장점	남소방지 어떤 단체가 소제기시 소송고지의 대상을 특정 하기 쉬움	법인격 갖추지 못한 민간단 체들도 소제기 가능 =>사법액세스권 확대, 단체 소송제도 활성화	환경단체소송제도 도 입한 국가 중 법인격 을 요구하는 곳은 없 는 것으로 파악.
단점	법인격을 갖추기 어려 움, 작은 환경단체가 배제되 는 문제	지자체에 등록된 민간단체까 지 포함할 경우 수천개에 이 를 수 있어, 소송고지의 어 려움. 남소문제, 기판력 문제	일본의 경우 법인격 을 요구하는 환경단 체 소송법률안 마련 했으나 통과X

(3) 활동내용 및 활동기간

해당 단체의 정관 및 활동내용에 있어서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모든 도입국가 공통이고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정한 활동기간 이상을 요구할 것인지, 한다면 몇 년으로 할 것인지 단체마다 이해관계 대립. 우리의 소비자기본법에서는 3년 이상 등록된 소비자단체를 요건으로 하고, 환경분쟁조정법에서는 2년 이상 활동 요구함

	활동기간 요구하지 않을 경우	활동기간 요구할 경우	해외 사례
장점	단체소송제도 활성화	남소방지 정관목적에 부합하는 실질 적인 활동을 했는지가 평가 되므로 “환경보호”를 위한	독일: 3년 미국: 無 중국: 5년 일본(안) : 법인격을

		환경단체소송제도의 도입목적에 부합	요구하면서 활동기간제한 없으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내용 요구
단점	남소문제, 어용단체 문제	신규 단체 진입 어려움, 환경단체소송제도의 비활성화 위험	

(4) 회원 수 요건

일정한 수 이상의 회원을 요구할 것인지 한다면 몇 명이 적절할 것인지 역시, 단체별로 참여하게 의견대립할 것으로 보임. 우리의 소비자단체소송제도에서는 일정한 수 이상(1천명 혹은 5천명)의 회원을 요구하고 있고, 환경분쟁조정법에서는 100명 이상의 회원을 요구하고 있음. 환경분쟁조정법은 피해자를 “대리” 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환경단체의 요건을 정하는 것이므로 “환경단체”가 직접 “환경이익”을 위하여 당사자가 되는 환경단체소송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음.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경우 “100명 이상의 회원”이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환경분쟁조정법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같이 100명 이상의 회원수를 요구하는 것이 적정한가 문제.

	회원 수 요구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수 이상 요구할 경우	해외 사례
장점	단체소송제도 활성화	남소방지	독일: 無
단점	남소문제, 어용단체 문제	신규 단체 진입 어려움, 작은 단체가 작은 지역의 환경이익을 대변할 수 없는 문제,	미국: 無 중국: 無 일본(안) : 無

		환경단체소송제도의 비활성 화 위험	
--	--	-----------------------	--

(5) 재심사 VS 영구적(정부승인제도 하에서)

환경부 등 정부의 승인을 받은 단체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해당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재심사 없이 “승인단체”로서의 요건을 유지하게 할 것인지, 주기적으로 재승인을 받도록 요구할 것인지 문제. 이는 일정한 활동기간을 요구할 것인지와 맞물리는 문제로 보임. 몇 년 이상의 활동기간을 요구하는 제도하라면 재승인의 필요성이 덜할 것이나(그런 단체는 지속적인 활동이 입증되었고 장래에도 계속 활동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활동기간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제도하에서는 활동없는 단체를 악용할 수 있으므로 재승인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오스트리아의 경우 3년 이상 활동, 100명 이상의 회원을 요건으로 하면서 3년마다 재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 밖에 독일, 중국의 경우 재심사 규정 찾지 못함.

3. 해외 활용 사례

가. 독일

(1) 주관적 소송의 경우 승소율이 대략 10~12%에 불과하나 , 환경단체소송의 승소율은 약45%임.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 연방차원에서 환경단체소송이 제기된 건수는 연평균 28.5건으로 남소에 대한 우려와 법원의 부담 가중 문제는 독일 실무상 근거없는 것으로 밝혀짐.

(2) 독일의 환경단체(DUH)는 하급법원에 슈투트가르트시와 뒤셀도르프시의 대기오염이 EU 환경기준보다 2배 이상 초과하여, 해당 도시의 대기기준

강화가 필요하며 이의 일환으로 시 당국이 디젤 차량의 운행을 금지할 의무가 있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승소하였고, 이에 두 시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18.2.27. 독일 라이프치히 연방행정법원이 항소를 기각함 => 연방행정법원의 판결은 독일 전역에 적용되어, 독일 내 EU 대기오염기준치를 넘어선 70여개 도시는 도심지 디젤차량 운행중지 명령이 가능하게 됨²⁾. DUH는 18.3.29.에 추가로 독일 내 11개 시(환경기준초과도시)를 상대로 같은 소송을 제기하였음.

나. 중국

(1) 2015년 1월 신환경보호법이 시행된 후 2016년 6월까지 전국 법원은 사회조직이 제기한 환경민사공익소송 1심 사건 93건 접수. 2015년 7월 인민검찰이 제기한 환경민사행정공익소송은 총 21건 접수³⁾.

(2) 중화환경보호연합회⁴⁾는 2015. 3. 전화유한공사(더저우 시내 공장 운영)를 상대로 28,200,000위안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오염물 배출의 즉각적인 중단, 오염 방지시설 증설, 언론 매체 사과문 게재, 소송 및 감정비용 부담 등을 요구했는데, 더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원고는 원고환경보호연합회가 환경보호법 제58조에 따라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중국어로는 사회조직)이고, 피고 전화유한공사 역시 2013년 11월부터 수차례 이산화황질소산화물연분진 등 오염물을 대기로 배출하고 있으며, “환경보호행정기관의 여러 차례의 행정처분을 통해 시정되지 않아, 그 행위가 중대한 법률적 행위”라고 하였음. 이에 결국 피고는 기준 초과 오염물 배출로 인한 피해액 2198

2) 출처 : 대한석유협회 조사보고서 18-06

3)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1504923, [마지막 방문 2018. 11. 22.]

4) 중화환경보호연합회는 환경보호부에서 관리하는 단체로 비록 민간단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부에서 만든 환경보호단체라고 말할 수 있다(로청석 459 각주 4).

만3600위안을 배상하고, 원고가 지출한 손해 감정비 10만 위안과 소송비 18만 2000위안도 지급하도록 판결 하였음.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2019. 8. 23

: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회

문의: 02-743-4747